

# 대원대학교 학교기업 규정

제정 : 2013.01.01

개정 : 2021.12.01

개정 : 2023.10.16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와 「학교기업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의거하여 대원대학교 학교기업(이하 “학교기업”이라 한다)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기업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2조(명칭 및 소재지) ① 학교기업은 대원대학교 교지 내에 둔다. <개정 2021.12.01.>

② 학교기업의 각 사업별 세부명칭은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3조(조직) ① 학교기업은 교직원 및 산학협력단의 연구원, 직원은 총장의 요청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 다만, 교수의 경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수업시수를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>

② 학교기업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.

<개정 2021.12.01.>

## 제2장 운영위원회

제4조(구성) ① 학교기업의 운영 목적과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운영에 따르는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9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, 2023.10.16.>

② 운영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<개정 2021.12.01.>

1. 학교기업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<개정 2021.12.01.>
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3.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<개정 2021.12.01.>

### 제3장 재정 및 회계

제6조(예산 및 회계) 학교기업의 회계는 본 대학의 교비회계에 의한다.  
<개정 2021.12.01.>

제7조(수입과 지출) 학교기업의 수입과 지출은 본 대학의 예산회계처리 지침에 따른다.  
<개정 2021.12.01.>

제8조(예산과 결산) 학교기업의 책임자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에서 정하는 기일 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### 제4장 현장실습 및 연구

제9조(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) ① 학교기업을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  
② 학교기업의 시설·설비,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적절성, 직원의 수 및 인적 구성, 실습여건 및 후생복지 등이 학생의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을 「직업교육훈련촉진법」 제8조에 의한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.  
<개정 2021.12.01.>

제10조(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) 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%까지 인정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>  
②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을 1개 학기당 30시간 이수한 경우 이를 1학점으로 인정한다. 다만, 학과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>  
③ 기타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.  
<개정 2021.12.01.>

제11조(보상금의 지급) ① 학교기업 운영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 시 순이익의 20% 범위 내에서 순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다.  
<개정 2021.12.01.>  
② 교직원 1인당 연간보상금은 순이익의 20%를 넘을 수 없다. <개정 2021.12.01.>  
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

없다.

④ 제2항,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.

<개정 2021.12.01.>

## 제5장 교직원 지원

제12조(교직원의 지원) 학교기업의 교직원의 임면에 관한사항은 학교법인의 「정관」에 따른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13조(실무부서) 대표자는 본 대학 학교기업 운영에 필요한 내부 실무자를 구성하고, 학교기업 직원의 분장 직무를 정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14조(직원의 대우 및 준용) 연구원 및 교직원은 대원대학교 교직원 인사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대우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>

## 제6장 보 칙

제15조(내규 제정) ①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학교기업별 내규로 정한다.

② 학교기업 내규는 운영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16조(준용 규정)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 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부 칙

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